

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181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11. 12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2021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: 24,697천원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,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.3/10,000을 출연금으로 배정

3. 출연금 심의요구서 : 따로 붙임

4.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: 따로 붙임

5. 출연기관 현황 : 따로 붙임

출연 심의요구서

기 관 명	한국지방세연구원								
출연대상	○ 대 표 : 배진환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서울 서초구, (인력) 정원 92명/현원 62명 (주요사업)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			
출 연 사 업 비	○ <u>출연 예정금액 : 24,697천원(군비 24,697천원)</u>	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								
	구 분	사업기간	2020년 예산액	2021년 요구액	재원별				
					계	국비	시비	군비	기타
	합계		25,099	24,697				24,697	
	기관 운영비	1년	17,817	17,041				17,041	
	주요 사업비	1년	7,282	7,656				7,656	
연구사업	1년	3,839	2,223				2,223		
자치단체지원	1년	3,443	5,433				5,433		
출 연 필 요 성	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								
근거법령	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○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								
사업부서의견	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 간행물 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.								

사업부서 검토의견서

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< 이사회 결산감사 >

-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, 2019년 사업 및 예산집행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고, 연구과제 160건 수행, 지방세 교육(4,400명)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였음.
- 그간 지출 절감을 통한 예산을 대부분 청사이전('17년)에 따른 대출 상환에 사용하였으나, '20년 대출상환 완료 예정이므로 향후 중장기 예산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함.

< 운영실적 평가 >

- 연구과제 발굴시 수요기관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, 연구과제의 질적, 양적 성과평가 방법의 도입이 요구됨.
- 미션과 비전에 연계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7개의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,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성과관리체계가 개선되었으나, 추진과제들이 중기(5년)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장기적 관점의 계획은 다소 부족함.

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.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.
-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,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, 지방세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.

③ 출연금 검토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9년 결산 지방세	2019년 결산 보통세 (C)	2021년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
출연금	190,000,227	189,978,586	24,697	24,697	0	△402

출연기관 현황

[단위 : 백만원]

설립근거	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			전화번호 : 02-2071-2789			
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		
주요연혁	◦ 2011. 2월 설립등기 ◦ 2011. 4월 개원			기관형태	출연기관		
인원현황 (‘20. 8월 기준)	계		정규직		임시직 · 파견		
	71명		62명 (연구위원20, 연구원14, 전문직2, 사무직22)		9명 (행정원1, 파견공무원8)		
임원 (‘20.8월 기준)	직 책	성 명	주요경력		임 기		
	이 사 장	허 성 관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’17. 12. 22. ~ ’20. 12 .21.		
	부이사장	황 명 선	충청남도 논산시장		’20. 2. 28. ~ ’21. 2. 27.		
	이 사	배 진 환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당 연 직		
	이 사	이 우 종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		당 연 직		
	이 사	김 정 기	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’20. 2. 28. ~ ’21. 2. 27.		
	이 사	김 광 용	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”		
	이 사	차 호 준	강원도 기획조정실장		”		
	이 사	정 원 춘	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		”		
	이 사	이 승 학	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		”		
	이 사	김 항 섭	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		”		
	이 사	송 금 현	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		”		
	이 사	금 재 덕	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	”		
	감 사	김 영 빈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당 연 직		
	감 사	김 용 만	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		’20. 2. 28. ~ ’21. 2. 27.		
주요기능	◦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	
자본금 ¹⁾	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직전연도말 기준)	68,754	
최근 3년간 예산 현황	연도	2018	2019	2020	재무현황 ’19. 12. 31.기준	자산	17,715
	예산액 ²⁾	13,719	12,897	12,378		부채	849
	지자체 지원액 ³⁾	12,102	10,843	11,391		자본 ¹⁾	16,866
경영성과 ’19. 12. 31.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
	11,951				8,817		3,134

1.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2.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3. 해당 기관 예산액(2) 번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부 칙 <대통령령 제30994호, 2020. 9. 8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)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.3으로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